

대전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가단20709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1028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가단207096 판결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6. 1. 27.

판결 선고 2016. 3.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해서는 2015. 6. 8.까지, 피고 C에 대해서는 2015. 8. 28.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14.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5. 1. 5.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14. 6. 2. 접수 제556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5. 3. 13. 접수 제30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다만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함)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2년 2월경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 체결 당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A가 2013. 12. 31.까지 2차년도분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5. 3. 17.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는 2013. 5.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는 담보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2013. 12. 31. 이전에 채무자인 피고 C의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날짜에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한편 피고가 제출한 담보부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이 2013. 5. 27.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의 성립과 피고 C의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C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예약을 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A가 2013. 12. 31.까지 2차년도분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원고가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직후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C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2011년경부터 현금을 대여해 주는 등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B는 2014년 5월경 원고에게 이전에 대여한 돈의 상환을 조금만 더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면서 더 많은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기에, 피고 D은 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F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직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F은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상영

별지